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9.

발 의 자 : 인요한 · 권영진 · 조승환
곽규택 · 김 건 · 송석준
구자근 · 성일종 · 장동혁
김도읍 · 정점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, 사생활 침해,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우울증, 불안장애,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 등).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·상담)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
2.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인

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사를 두어야 한다.

④ 심리상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·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사의 배치기준·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자

제41조제3항 중 “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2.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사를 두지 아니한 자
3.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·상담)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1.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</u> <u>2.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인</u> <u>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</u> <u>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</u>

제4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1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

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

상담사를 두어야 한다.

④ 심리상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·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사의 배치기준·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벌칙) ① -----

-----.

1.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자

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

<u>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④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</u> 2. <u>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사를 두지 아니한 자</u> 3. <u>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</u>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